

가칭 가정폭력방지법 안의 체계

작성자 : 변호사 이 찬 진

1. 법률안의 성격

이 법안의 설명에 앞서서 법안 기초작업을 담당하였던 한 사람으로서 본 법안에서 담당자들이 담고자 하였던 보호법익 내지 입법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가정폭력 의 문제를 대처함에 있어서 사회의 기본단위로서의 가정이라는 관점에서 가정의 평화와 안정성을 국가적으로 보장하도록 일관하였다.

즉,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법률제정이 단지 폭행당하는 아내 또는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으로만 국한해서 보지 않고, 형사처벌 위주의 현행체계를 강행할 경우 야기되는 가족의 해체(이혼 등 기타 사유로 인한)와 이로 인하여 경제적 약자인 여성, 노인, 아동 등이 겪어야 할 사회적, 구조적인 불평등 현상에 주목하였다.

이 점은 현 단계의 한국사회의 열악한 사회보장 수준에서 그 논거를 찾게 되었는데 현재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우 대부분의 전업주부의 입장이나 노인, 아동의 경우에는 가족 해체시 극소수의 국민자들이 보호되는 생활보호법 및 노인복지법 등에 의한 공적부조를 제외하고는 여하한 생활보장 수단이 없다.

현재 처벌법 위주의 입법으로 선회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각국의 경우에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절차가 진행됨과 동시에 그 가족은 이혼 등을 통하여 거의 대부분 해체되지만 해체된 가족의 구성원들은 모두 사회보장체계에 의하여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된다. 이에 대하여 한국 사회는 이

와같은 보장 체계가 전무하다는 실정에서 처벌법규 위주의 법제도화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현재의 사법 및 경찰제도의 비능률성에 주목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로서 현행 사법제도에서 보기 어려운 새로운 사법서비스 시스템을 법안에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이 법안이 입법되어 실효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상당 부분은 이 법안 제2장의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관할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 부담여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가정폭력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여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간과하였던 계부,모자관계는 물론 세대간의 갈등으로서의 아동학대, 노인학대의 문제도 이 법의 절차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타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의 균형을 감안하여 복지전달체계와 보호시설의 설치 및 예산 지원에 관하여 현실적인 고려를 하였다.

입법시 예산문제로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억제하고 이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전달체계의 상당부분을 사법부에 이관함으로써 최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의 사법부의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사법부 역시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사법의 제공을 도모함과 아울러, 새로운 행정 전달 체계의 수립을 최대 억제하여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였고, 적어도 입법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한 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 본 법은 소위 가정폭력의 현행법 상황의 경우에 특히 유용하게 적용되도록 고려하였다.

(1) 현재 가정폭력 에 관하여 문제시되는 것은 현장 상황에 대한 경찰 또는 사법의 적극적인 개입과 가해자 및 피해자의 즉시 격리 또는 분리과 이에 부수되는 각종 상담 및 피난처의 제공 등 2차적인 예방 프로그램이 전무하다는 점임을 고려하여, 현행 경찰력 행사 및 사법체계에서 전혀 실현할 수 없었던 1)경찰관의 즉시 출동 및 개입 2) 법관의 영장에 의한 가해자에 대한 임시적인 퇴거명령, 접근 금지 명령 등을 채택하였다.

(2)이 법의 절차는 피해자 또는 그 보조인, 제3자 그 누구에 의하여도 경찰, 검찰에 대한 고소, 고발, 또는 신고 형식에 의하든 아니면 법원에 대한 각종 형식의 신청에 의하든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일단 절차가 개시되면 피해자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법원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처분이 되도록 절차를 간편하게 하였다.(이점은 형사절차와 유사하다) 그러면서도 형사절차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피해자의 의사에 의한 형사절차로의 진행여부(소위 5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행위나 가정폭력 3범 이상의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에 의한 형사절차로의 이송 - 제5조 제2항 2호 참조) 결정권 등 피해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였다.

(3) 현장에서 가해자의 분리는 물론 피해자에 대하여 본 법에서 정한 각종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는 것을 경찰관의 의무로 규정하여 피해자의 의사여하에 따라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피해자 보호의 일환으로서의 의료보호의 규정을 원용하였다.)

(4) 가정법원에서의 재판 과정에서도 가정폭력의 2차적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각종 가처분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가해자가 대부분 생활력이 있는 가
장임을 감안하여 양육비 지급명령 등 까지도 포함하였다.

바. 본 법의 절차 활용을 최대한 쉽게 하여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사법적인 절차
의 진행을 사실상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광범위하게 보조인을 규정하여 동
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본인을 보조하게 함으로써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절차적
인 접근을 최대한 용이하게 하였다.

사. 소위 가정보호사건은 형사적 절차는 아니지만(따라서 전과가 되지는 않으며
인신 구금은 최대한 억제되어 있다. - 따라서 가해자의 가정 복귀가 상대적으
로 용이하게 되어 있고, 이 절차를 활용하여도 고소, 고발로 인한 가해자의 형
사처벌로 인한 가정파탄의 위험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피해자
측에서 필요로 하는 가해자에 대한 각종의 제한조치는 유연하게 포괄하였으며,
그 강제력은 형사절차보다 오히려 크도록 배려하였다. 가령 가해자에 대한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구상권 조항을 둔 것은 경제적인 제재를 통한 폭력
의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 법에
의하여 소요되는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원인 제공을 한 가해자로 하여금 부담하
게 함으로써 예산 부담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정책결정에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로서 가정보호위원회를 두고, 정부와 자치단체의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보호시설의 설치, 홍보 등의 각종 서비스
제공책임과 예산 확보를 강제하였다.

2. 기타 사항

이 법안은 법조계에서도 매우 생소한 내용이어서 가정법원 법관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들에 의한 충분한 후속 작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이 법안에 대한 알기 쉬운 해설서 등도 첨부하여 그 이해를 도와야 하나 발제자의 시간적인 제약 등으로 이를 준비하지 못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내용은 질의/응답 형식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